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3. 5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3. 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3. 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이상문)

가. 제안이유

○ 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조례는 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기준으로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폐기물소각용량을 1일 200톤에서 삼정동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함(안 제3조)

○ 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로 함(안 제4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에 소각용량을 삼정동은 1일 200톤, 대장동은 1일 300톤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해야 하는가? 1~2톤을 더 소각 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?	○ 법적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가 조금 올라감
○ 삼정동과 대장동의 최대 저장량은 얼마인가?	○ 삼정동은 약 1,000톤으로 5~6일치 정도 저장되며, 대장동은 약 3,200톤으로 10일치 정도 저장할 수 있음
○ 대장동 소각장 운영주체는?	○ 주식회사 대우임
○ 언제부터 몇 년 간 위탁하는가?	○ 지난 3월 4일부터 3년 간 위탁계약하였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50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조례는 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기준으로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폐기물소각용량을 1일 200톤에서 삼정동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함(안 제3조)

○ 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로 함(안 제4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이하 "소각시설"이라 한다)"을 "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시설(이하 "소각시설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1일 200톤"을 "삼정동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소각시설"을 "삼정동소각시설"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.

제4조제3항(종전제2항) 중 "중동신시가지에서"를 "부천시 전지역에서"로 "기존신시가지와 동일한"을 "매립"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중 "중동신시가지"를 "부천시 전지역의"로, "200톤"을 "500톤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이하 "소각시설"이라 한다)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(이하 "가연성폐기물"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·····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시설(이하 "소각시설"이라 한다)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
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종류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	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종류 및 소각용량)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삼정동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·····
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소각시설에서는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. 다만,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신시가지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. 1 및 2(생략) (신설) ② 시장은 중동신시가지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중동신시가지 가연성폐기물이 1일 200톤을 초과 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. (생략)	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삼정동소각시설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1 및 2(현행과 같음) ②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. ③·····부천시 전지역에서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매립····· ····· 1. (현행과 같음) 2. 부천시 전지역의·····500톤을····· ····· 3. (현행과 같음)